

소식지



October.2017

VOL.58

커버스토리

NEWS

YES FTA

FTA STUDY

유용한 기능

안내서



CONTENTS

NEWS

2017년 FTA-PASS 아이디어 공모전

→ YES FTA

YES FTA 전문교육 FTA-PASS 과정 10월 교육일정

FTA STUDY

품목분류 사전심사제도 안내

유용한기능

부가가치 버퍼율 설정

∘ 안내서

FTA-PASS의 <mark>올바른 사용을 위한 안내서</mark> 원산지확인서 보정발급



소식지

October.2017

VOL.58

커버스토리

NEWS

YES FTA

FTA STUDY

유용한 기능

안내서

2017년 FTA-PASS 아이디어 공모전 안내

2017년 FTA-PASS **아이디어 공모전**



FTA 윈산지관련 업무담당자 및 관심이 있는 분



정합성	FTA-PASS 기능이 FTA 법령 및 협정의 원산지 규정과 다른 사례
편의성	FTA-PASS 활용 편의성 제고를 위한 기능 개선 의견
기 타	FTA-PASS 관련 기타의견 제안 등



신청서 작성 후 담당자 이메일(<u>fta-pass@origin.or.kr</u>) 접수 ※ FTA-PASS 홈페이지에서 신청양식 다운로드 가능



공모기간 2017년 9월 26일(화) ~ 2017년 10월 20일(금) 18시 제출마감 발표일 11월 1일 (수)*

지급일 11월 8일 (수)**

*FTA-PASS 사이트에 게시 및 개별 유선통보

**포상은 FTA-PASS 간담회 일정에 이루어지며, 수상작은 FTA-PASS 전문가와 대화 예정



포상금 총 55만원 **우수상(3명)** 10만원 (총 30만원) **장려상(5명)** 5만원 (총 25만원)



접수 및 문의

담당자

국제원산지정보원 FTA-PASS 사후관리팀

문의처 1544-0645

이메일 fta-pass@origin.or.kr





소식지



October.2017

VOL.58

커버스토리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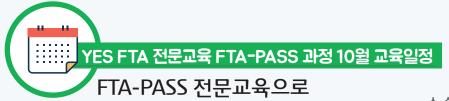
NEWS

YES FTA

FTA STUDY

유용한 기능

아내서



자신감 UP! 능력 UP! 소수정예 · 실무중심의 FTA - PASS 전문교육을 통하여 기업현장에서 바로 FTA - PASS를 활용할 수 있습니다.



교육대상

FTA-PASS 사용자 또는 사용예정자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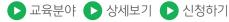
교육비용

전액무료



신청방법

YES FTA 교육지원센터











교육일정

지역	교육일	장소				
서울	10.23(월) 10:00~17:00	더존교육장				
부산	10.23(월) 10:00~17:00	한영평생교육원				
광주	10.25(수) 10:00~17:00	대전통계교육원				
인천	10.27(금) 10:00~17:00	인천시청자미디어센터				

교육내용

교육과정	교육내용						
	· 활용개요	· 원산지증빙서류 작성					
[특화분야] FTA-PASS	· 입력정보 작성과 등록	· 부가기능					
	· 원산지 판정과 해석						



소식지



October.2017

VOL.58

커버스토리

NEWS

YES FTA

FTA STUDY

유용한 기능

안내서



품목분류 사전심사제도 안내

품목분류사전심사제도란?

물품을 수출입하고자 하는 자, 수출할 물품의 제조자가 관세청장에게 품목번호(HS코드)에 대한 사전 심사를 신청하여 회신을 받는 제도(WCO권고사항)

[품목분류사전심사제도(관세법 제86조)]

대상물품	수출입 물품
신청권자	수출입하려는 자, 수출할 물품의 제조자, 관세사, 관세법인 또는 통관취급법인
처리기관	관세평가분류원
신청방법	○ 품목분류사전심사 신청서 작성 ○ 우편 또는 직접방문 상담 후 신청, UNI-PASS(관세청전자통관시스템) * 시험이나 분석 등이 필요한 경우 : 품목당 3만원(분석 수수료)
처리기한	o 신청서 접수일로부터 30일 이내 * 자료보정요구, 정밀분석, 품목분류위원회상정 기간은 포함되지 않음
효력발생일	품목분류 심사서 시행일
유효기간	통지를 받은 날부터 3년
통지방법	인터넷전자메일,우편,FAX로통지
● 피스 그녀	

● 필수 구비서류

- 1. 신청대상 물품의 견본 1점(견본 미제출 시 대체사진 3장)
- 2. 제조회사의 성분표(분석물품에 한함), 제조사양 설명서 1부.
- 3. 물품설명서

【별지 제1호 서송	식의 갑지]								
	품목분류시	·전심사 /	신청서	처리기한 15일/30일					
① 신청인구	분 □ 수출입. □ 수출 제		②수출입구분	□ 수출 □ 수입					
③ 회사(업체)		,	④ 대표자 성명						
© 시어지드로버			⑥관세사부호						
2 2	소								
정당당자성	명		⑨ 전 화 번 호						
인 휴대폰번	Š.		① FAX 번호						
② 전 자 메 9	길		® 처리과정수신방법	□ 이메일과 SMS □ 통보안함					
스 10 수출입업체	명		® 담당자 성명						
출 16 사업자등록번	호		① 전 화 번 호						
출 16 사업자능독번 입 18 홈 페 이 자 5m 주	지		⑨전자메일						
잔 🔞 주	소								
하외거래	처 ②상호		② 홈페이지						
신 정품	명								
- 30 Z	델								
청 🖾 규	격								
5 5 5	지		∅거 래 가 격						
		(별지 제1호서식							
[□] ❷ 검토 품목번.		ᅠ◎ 통관예정 세관							
③ 신 청 사 -		 □ 세율·세액 확인 □ 관세환급 □ 수출입요건 확인 □ 기타(
② 신속심사요청		□ 해외 관세당국의 FTA 원산지 검증 확인 요청 □ 수출입신고 임박물품 □ 막대한 경제적 불이익 예상							
7) - 77 7 7 7	□ 제 축			화불요 □반화요					
기 ③ 견본제출여	무 □ 미제출		⊗사 유						
타 ※결과 비공]규·계획단계들		조비법 물품					
(제10조제1		L 밖의 비공개	정당사유 물품						
제1호에 한학	- 내용 <i>비송</i>	내용 비공개 사유를 구체적으로 설명							
				-1					
				·함)					
' 단	세법」 제86조제	1양에 따다 눔	목분류사전심사를 성	인정압니다. 년 월 일					
			신청인	(서명 또는 인)					
관세평가분류원	<u> 1</u> 장 귀하			(10 == 6)					
※ 필수 구비서류		FI # 11 FI FI 11 FI	0.71)						
2. 제조회사의 성분	Ⅰ 견본 1점(견본 미: 르표(분석물품에 한힘	예열 시 내세사신), 제조사양 설명	38) 서 1부.						
	별지 제1호서식 율지								
※ 유의사항 1. 범칙조사나 불복(교대자전투시 시시청	고 시파체그) 또느 :	해저스소 드이 지해 중이 그	경으에는 시청하 스 어스니다.					
2. 신청물품에 대한	품목번호는 제시된	자료에 의거 결정	되므로, 적정한 품목분류	경우에는 신청할 수 없습니다. 류를 위해서는 정확하고 상세					
하게 물품정보를	기재하여야 하며. 신	「청서에 주요한 내	용이 미비된 경우에는 점	수되지 않을 수 있습니다. 무처리상 부득이한 경우에는					
처리가 지연될 :	수 있으며, 지정된 :	기간내에 보정서류	가 제출되지 않는 경우	에는 반려될 수 있습니다.					
5. 신청서는 1품목	별로 시청하시기 바	라니다		트리오니 양지하시기 바랍니다.					
6. 수출입 임박, 및 사유기재와 사유	나대한 경제적 피해 유서를 제출하시면 /	예상 등 신속한 품 사전심사의 신속한	목분류사전회시가 필요 처리에 도움이 됩니다	요한 경우 신청서 제출시					
471-1-11-1				·지 60g/m²(재확용품)					



소식지



October.2017

VOL.58

커버스토리

NEWS

YES FTA

FTA STUDY

유용한 기능

안내서

부가기치 버퍼율설정

안정적인 원산지 관리를 위한 부가가치 '버퍼율' 사용하기~!!

[활용사례]

원산지 기준

한-EU FTA 9405.20은 MC50%로 판정합니다.

해당 물품의 생산에 사용된 모든 비원산지재료의 가격이 해당 물품의 공장도가격의 50%를 초과하지 아니한 것

버퍼율 설정

5%

원산지 기준 MC50%보다 5%낮은 MC45%로 판정합니다.



• 원산지기준:

원산지기준이 MC50%는 판정결과 MC50%이하만 원산지 지위 인정

• FTA-PASS 버퍼율 설정:

버퍼율 5% 설정시, 원산지 기준 MC50%로 보다 5%낮은 MC45%이하만 원산지 지위 인정 → **안정적인 원산지 관리 가능**

● 보수적인 원산지관리를 위한 버퍼율 설정

보수적인 원산지판정관리를 위하여 회원가입 시 기본 버퍼율이 "부가가치버퍼율(5%), 최소기준버퍼율(3%)" 로 설정되어있습니다.

※추후 업체 상황에 맞게 수정 필요







소식지



October.2017

VOL.58

커버스토리

NFWS

YES FTA

FTA STUDY

유용한 기능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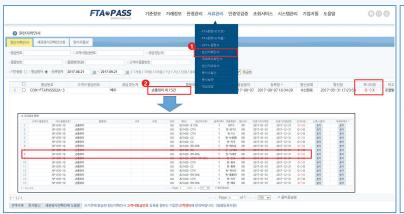
안내서



원산지확인서 보정발급

원산지확인서 **보정발급하기**

원산지확인서를 발급한 물품의 원산지 지위변동이 있을 경우 변동이 있는 물품의 해당 확인서를 보정발급 하는 기능입니다.



원산지확인서 발급 후 포괄확인기간 내에 물품의 가격에 변동이 있어 이를 적용하여 재판정을 하였더니 해당 물품의 원산지지위가 변경되었다면 모니터링(0→X) 확인 후 보정발급을 진행



4.	5.자유무역	6.품목번호	7. 품명 • 규	구격	8.수량 및	9. 원산지	10. 원선	난지결정	11.	12. 원산지포괄확인기간
연번	협정명칭	(HS No.)	[Description • Specification		단위	결정기준	기준 충족		원산지	(년 월 일 ~ 년 월 일)
(S/N)	(Name of		of Good(s)]	(Quantity	(Origin	여부		(Count	[Blanket period
	FTA)				& Unit)	Criterion)	(Fulfillment		ry of	(YYYY/MM/DD ~
							of Origin		Origin	YYYY/MM/DD)]
							Criterion))	
			고객품번				충족	미충족		
			(Part No)	품명 / 규격			(Y)	(N)		
	APTA	821420				B 13%	[1	[]	KR	2017/01/01~2017/12/31
	한-EFTA	821420		손톱깎이		CTH	[1	[]	KR	2017/01/01~2017/12/31
	한-EU	821420				CTH	[\]	[]	KR	2017/01/01-2017/12/31
	한-뉴질랜드	821420				CC	[1	[]	KR	2017/01/01-2017/12/31
1	한-미국	821420				CC	[\]	[]	KR	2017/01/01~2017/12/31
	한-베트남	821420				BD 40%	[\]	[]	KR	2017/01/01-2017/12/31
Ι.	한-싱가포르	821420				CC	[1]	[]	KR	2017/01/01~2017/12/31
	한-아세안	821420				BD 40%	[\]	[]	KR	2017/01/01-2017/12/31
Ι,	한-인노	821420				CTSH+BD 35%	[1]	1 1	KR	2017/01/01~2017/12/31

(보정발급 전)



〈보정발급 후〉

4.	5.자유무역	6.품목번호	7. 품명 • 구	구격	8.수량 및	9. 원산지	10. 원신	·지결정	11.	12.원산지포괄확인기간
연번	협정명칭	(HS No.)	[Descripti	on • Specification	단위	결정기준	기준	충족	원산지	(년 월 일 ~ 년 월 일)
(S/N)	(Name of		of Good(s)]	(Quantity	(Origin	여부		(Count	[Blanket period
	FTA)				& Unit)	Criterion)	(Fulfi	Ilment	ry of	(YYYY/MM/DD ~
							of 0r	igin	Origin	YYYY/MM/DD)]
							Crite	rion))	
			고객품번	# H / J H]		충족	미충족		
			(Part No)	품명 / 규격			(Y)	(N)		
	APTA	821420				B 13%	[1	[]	KR	2017/01/01~2017/12/31
	한-EFTA	821420				CTH	[1	[]	KR	2017/01/01~2017/12/31
	한-EU	821420				CTH	[1	[]	KR	2017/01/01~2017/12/31
	한-뉴질랜드	821420				CC	[1	[]	KR	2017/01/01~2017/12/31
1	한-미국	821420		손톱깎이		CC	[1	[]	KR	2017/01/01~2017/12/31
	한-베트남	821420				BD 40%	[1	[]	KR	2017/01/01-2017/12/31
_	한-싱가포르	821420				CC	[1]	[]	KR	2017/01/01~2017/12/31
	한-아세안	821420				BD 40%	[1	[]	KR	2017/01/01-2017/09/06
	한-아세안	821420				BD 40%	[]	[1]	불명	2017/09/07-2017/12/31

<원산지 지위가 변경된 물품의 경우 원산지 지위가 변경된 날(가격변동 적용한 매출일 기준) 이후 해당 물품의 원산지가 '원산지 불명'으로 표기되고 포괄확인 기간 내용도 변경>